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등 지원 대상 확대 >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318호)

2025. 9.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 검토의견	2
------------------	---

※ 참고자료

1.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현황	12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충권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2. 20.
3. 회 부 일 : 2025. 2.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 사업주에 대해서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 사업주인 경우도 별도로 일정 인원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물품으로 제한되어 있는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이 사업주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을 상시고용하는 사업주인 경우로 조정하고, 우선 구매 대상을 물품 및 용역으로 확대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 구매 계획 및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5).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이 사업주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을 상시고용하는 사업주인 경우로 조정하고, 우선 구매 대상을 물품 및 용역으로 확대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 구매 계획 및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임 (안 제17조의5).

현행	개정안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① 통일부장관은 <u>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u>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① -----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가 생산하는 물품 및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생산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 등----- -----.
1. <u>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u>	1. <u>북한이탈주민인 경우</u>
2.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u>	2.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상시고용하는 경우</u>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u>공공기관의 장</u> 은 제1항에 따른 <u>사업주가 생산한 물품</u> 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생산품----- -----.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의 우선 구매 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구매 실적과 해당연도 구매 계획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매 실적 및 계획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	---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¹⁾는 일정 비율(연평균 3명 이상, 월평균 근로자 5% 이상)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산품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선 구매 제도는 2000년 1월 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는데, 제도 도입 이후 2021년 1월까지 우선 구매 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전무한 상황이었다가, 2022년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1)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이후 지정되기 시작하여 총 11개 기업이 지정된 바 있으며, 2023년 11월 1개 기업이 지정서를 반납하고, 25년 7월 28일 2개 기업의 지정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8개 기업이 모범사업주로 지정 중임.(참고자료 참조)

□ 그런데, 우선 구매 지원 범위가 ‘물품’으로 제한되고,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우선 구매 지원제도가 도입²⁾된 이래 지정요건을 완화³⁾하였음에도 불구하고(10명→7명→5명→3명 고용), 모범사업주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 수도 적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개정안은 생산품 우선구매 등의 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 개인 또는 북한이탈주민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주로 확대하고, 우선구매 지원 범위를 ‘사업주가 생산하는 물품 및 제공하는 용역’으로 확대하며, 공공기관이 구매 실적 및 계획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이와 같은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1인 자영업자, 소규모 창업자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지고, 생산품 뿐만 아니라 용역도 우선 구매 대상이 되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 기반 확대에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6056호, 1999. 12. 28, 일부개정]

3)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의5(우선 구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6695호, 2000. 1. 28,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17호, 2007. 6. 28,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77호, 2019. 7. 16,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95호, 2021. 8. 17, 일부개정]

기여함과 함께 공공기관등이 우선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증대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은 우선 구매 지원에 대하여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관리·감독 체계 기반을 일정하게 마련하고 있는바, 우선구매제도의 관리 및 그 실효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우선 구매 제도는 그 도입 후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없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개정안과 같이 물품 이외에 용역 등을 우선 구매 대상 품목으로 확대하고자 할 때 지정 가능한 업체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전평가가 선행될 필요는 있어 보임.

□ 그리고, 개정안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이 확대될 경우 지원이나 혜택을 받기 위하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아닌 타인을 대표자로 등록하여 공공기관의 조달 등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소위 “위장 기업”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등이 해당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거나 해당 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위장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⁴⁾을 두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 여부에 대한 사업자
인증 또는 상시고용에 대한 확인 절차 등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개정안에서 사업주가 북한이탈주민이기만 하면 우선구매 지
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시고용’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위임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상시고용의 정의, 제출양식, 제출기
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해석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그 요건 등의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
안에 대하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⁵⁾⁶⁾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
사·검토하여, 여성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여성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
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자
 2.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
- ④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 여성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여성기업
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
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登記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 상의 회사(회사 대표로登記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
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 참고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부는 우선구매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등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를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유지 및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 등의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은 준비상황 및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기회를 잃게 되는 등 시장경쟁 왜곡의 가능성이 있고, 제한경쟁으로 가격·품질 경쟁이 감소되어 소비자 후생 저하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법무부는 사업주가 북한이탈주민이기만 하면 우선구매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여성 관련 유사 제도와 비교 시

-
-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 다. 이사회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 라. 이사회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에 한한다.

2.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② 법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지원 요건을 과도하게 완화하여 관련 법체계와 충돌 소지가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한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규정한 입법례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이 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7)의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경우 그 생산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8)의 경우

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구매 증대) ③ 중소기업제품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업종별 매출액 및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생산품에 대해서 국가기관 등 일정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⁹⁾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요건을 장애인 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하고,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 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24. 2. 6.>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2.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전체 근로자 중 70% 이상이 장애인이며 그중 60% 이상이 중증장애인일 것으로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 매 회계연도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연도 구매계획을 작성해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이 계획에는 공공기관이 구매할 품목과 수량, 그리고 총구매액 대비 최소 2% 이상 비율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 현황]

법률	대상기업	구매목표제	주무장관의 권고·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4조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 (시정요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	장애인기업	○	○ (권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중소기업	○	○ (필요조치요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여성기업	○	○ (권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아울러, 동 개정안과 같이 생산품 우선 구매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2건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바, 개정안들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박충권의원안 (의안번호 8318)	송옥주의원안 (의안번호 8451)	송재봉의원안 (의안번호 9537)
(주요내용)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지원 대상을 <u>북한이탈주민이 사업주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을 상시고용하는 사업주인 경우</u>로 조정하고, 우선 구매 대상을 물품 및 용역으로 확대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 구매 계획 및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5).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인 사업주인 경우도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 고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원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실효성있게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5).	(주요내용) 우선구매 지원 범위를 ‘사업주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u>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u>’도 포함하여, 우선구매 제도를 활성화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유지 및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7조의5).

※ 참고자료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현황

연번	기업명	업종 (주요 사업)	지정기간 (3년)
1	(주)지예산업	제조 (운동기구, 태양광 구조물)	2022.7.29.~2025.7.28. (지정기간 만료)
2	(주)글로브	제조 (식품)	2022.7.29.~2025.7.28. (지정기간 만료)
3	(주)제이티미그린	제조 (식품)	2022.12.29.~2025.12.28. (지정서 자진반납에 따른 지정취소)
4	(주)지원프린스	제조 (인쇄)	2022.12.29.~2025.12.28.
5	두남엔지니어링	건설 (승강기 설치·유지·보수)	2023.5.2.~2026.5.1.
6	(주)에스지데코	제조 (사무용 가구)	2023.5.2.~2026.5.1.
7	(주)크린필텍	제조 (에어 필터)	2023.12.11.~2026.12.10
8	티아이로지스(주)	물류 (창고)	2023.12.11.~2026.12.10
9	(주)송도에스이	서비스 (건물 관리)	2023.12.11.~2026.12.10
10	북지나라 재가서비스원	서비스 (요양)	2024.11.28.~2027.11.27.
11	(주)유나이트	생활폐기물 수거	2025.6.2.~2028.6.1.

* 지정기간이 만료된 기업은 지정 요건 충족 시, 재지정 신청 가능

문 의 처

02)6788-5267